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 근거 신설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03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 공동 지방출자 · 출연기관 설립 근거 마련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공동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 설립하거나,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을 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 ----- ----- ----- -----.

현행	개정안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제6항----- -----

현행	개정안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u>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u>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③ ----- 제1항----- ----- ----- <u>설립·운영의 타당성</u> -----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4조제1항은 주민복지 증진 또는 지역개발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지 문구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 출자·출연을 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공동 설립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① 현행법 제4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설립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점, ② 이미 (주)킨텍스¹⁾와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지방출자·출연기관(〔참고〕 참조)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 (주)킨텍스는 경기도 33.33%, 고양시 33.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33% 출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임.

① 규모: KINTEX는 국내 최대인 10만㎡ 전시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완공되는 제3전시장으로 총 17만 8천㎡의 전시면적이 확보될 예정

② 활동: 대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시 지원산업 육성 및 첨단 전시기술기반 산업 유치 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자체 문화관광 여건 개선 등 대한민국 MICE 산업 발전을 지향

③ 경영가치: 글로벌 전시장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 MICE산업의 대표 ESG 경영 표준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MICE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 그 세부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간의 공동 설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으로 보인다는 점과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참고

공동 출자출연기관 목록(24.6. 기준)

연번	유형	공동 설립 지자체	기관명	설립연도
1	출자 기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2002
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심층수	2006
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018
4	출연 기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2001
5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광주영어방송	2008
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학 호남진흥원	2017
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도장학회	1994
8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1998
9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000
10		경기도,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05
11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2013
12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강원연구원	1994
13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강원문화재단	1999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	2003
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997
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009
17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5
18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08
19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04
20		경상북도, 울진군	환동해산업연구원	2005
21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07
22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997
23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000
24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2000
25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2002